

1-1 2014년 주요 변경사항

업무명	2013년	2014년	변경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애 검사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연금, 활동지원,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연금, 활동지원,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	검사비 지원대상 확대(재판정도 지원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애인활동 지원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자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	이용자 교육 요구사항 반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외 결제 가능 기간 명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RS 결제,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는 서비스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 * 시행일 : 2014.5.1 이후 	예외결제 가능기간 기준마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활동지원기관 평가고시 반영 	고시제정 후 사업지침 반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애인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기준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독 589,000원, 부부 928,000원 근로소득 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당 월 43만원 기초급여(18~64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1.4월~'12.3월 : 91,200원 '12.4월~'13.3월 : 94,600원 부가급여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부 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기 초</td> <td>18~64세</td> <td>60,000</td> </tr> <tr> <td>65세 이상</td> <td>15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차 상 위</td> <td>18~64세</td> <td>50,000</td> </tr> <tr> <td>65세 이상</td> <td>5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차 상 위 초과</td> <td>18~64세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65세 이상</td> <td>2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구 분	부 가	기 초	18~64세	60,000	65세 이상	150,000	차 상 위	18~64세	50,000	65세 이상	50,000	차 상 위 초과	18~64세	-	65세 이상	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기준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독 680,000원, 부부 1,088,000원 근로소득 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당 월 48만원 기초급여(18~64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3.4월~'14.3월 : 96,800원 '14.4월~'15.3월 : 99,900원 (추후공지) 부가급여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부 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기 초</td> <td>18~64세</td> <td>80,000</td> </tr> <tr> <td>65세 이상</td> <td>17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차 상 위</td> <td>18~64세</td> <td>70,000</td> </tr> <tr> <td>65세 이상</td> <td>7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차 상 위 초과</td> <td>18~64세</td> <td>20,000</td> </tr> <tr> <td>65세 이상</td> <td>4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구 분	부 가	기 초	18~64세	80,000	65세 이상	170,000	차 상 위	18~64세	70,000	65세 이상	70,000	차 상 위 초과	18~64세	20,000	65세 이상	40,000	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및 공제액 확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
구 분	부 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초	18~64세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세 이상	1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 상 위	18~64세	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세 이상	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 상 위 초과	18~64세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세 이상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부 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초	18~64세	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세 이상	17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 상 위	18~64세	7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세 이상	7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 상 위 초과	18~64세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세 이상	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애인자녀 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단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과서대 : 119,200원 부교재비 : 36,000원 학용품비 : 49,5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단가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과서대 : 125,900원 부교재비 : 37,500원 학용품비 : 51,000원 	국민기초 교육급여 지원단가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업무명	2013년	2014년	변경사유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원대상 : 1~3급의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출산여부)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* 2012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●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원금액) 출산 시 산모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● 신청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자 신분증 (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) * 신청서 (서식1호) *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 *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원대상 : 1~3급의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재임신기간 만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- 201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이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(다만, 인공 임신중절 수술 (「모자보건법」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) * 2012년~2013년 지원대상자 중 출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●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원금액)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● 신청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자 신분증 (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) * 신청서 (서식1호) *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 *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 증명서 *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	<p>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상세화</p>
장애인 일자리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애인행정도우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지원액 1,016천원, 월 사업주 보험료 96천원 ● 장애인복지일자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보수 273천원, 연간 운영비 114천원 ●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보수 1,000천원, 월 운영비 108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일반형 일자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보수 1,089천원, 월 사업주 보험료 110천원 ● 장애인복지일자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보수 292천원, 연간 운영비 152.4천원 ●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보수 1,000천원, 월 운영비 108천원 ●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 보수 683천원, 월 운영비 105천원 	<p>행정도우미 → 일반형 일자리로 확대,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신규 반영, 일반형일자리·복지일자리 시간당 최저임금 단다 반영</p>
장애인보조기구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품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, 외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: 1~2급 지체·뇌병변·심장장애인 - 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, 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,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: 시각장애인 -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 증폭기) : 청각장애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품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, 외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, 목욕의자 : 1~2급 지체·뇌병변·심장장애인 - 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, 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,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, 녹음 및 재생장치 : 시각장애인 -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 증폭기) : 청각장애인 	<p>교부품목 변경 (자세보조용구 삭제, 녹음 및 재생장치, 목욕의자 추가)</p>

업무명	2013년	2014년	변경사유
	- 자세보조용구,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, 기립훈련기,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: 뇌병변장애인,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, 2급	-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, 기립훈련기,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: 뇌병변장애인,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, 2급	
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60호)를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인단서의 '진단 의사 소견'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『주차가능』 표지발급 가능 한 가구당 1장의 자동차 표지 발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60호)를 적용함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,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	<p>예외규정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및 부당 발급 우려 제기</p> <p>○운영상 불합리한 점 개선</p>
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는 3,800천원으로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는 3,800천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가감할 수 있음. 가구별 지원금액은 기준 금액의 50%~150% 범위로 함 	<p>개조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효율성 도모</p>
장애 심부름센터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차원 : 이용자의 예약접수 및 차량배차 전반에 관한 사항 보수는 _____, 사무원 및 배차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5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사업 및 설치·운영기준)장애인복지관 직원 자격 기준에 준하여 관리직 1급1호 또는 관리직 2급1호, 운전원은 관리직 3급8호봉으로 초임 확정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담원 : 이용장애인의 차량이용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상담, 연계,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보수는 _____, 사무원 및 상담원은 사무직 3급2호 또는 사무직 4급1호, 운전원은 관리직 3급8호봉으로 초임 확정한다. 	<p>배차원의지명및주요업무변경</p> <p>보수기준표조정</p>
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력은 지역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전문요원 3인을 포함한 4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력은 지역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전문요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,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	<p>지역특성에 따라 운영인력에 탄력성 부여</p>
발달재활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 단가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 단가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단가는 월 8회(주 2회), 회당 27,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공개 주체별로 서비스단가를 공개하여야 하는 소관 제공기관 규정 	<p>제도 개선</p>

업무명	2013년	2014년	변경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서비스 제공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자격증 소지자 -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-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-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,200시간 이상인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서비스 제공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-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- 소정 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	
언어발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대상자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령 : 만 18세 미만 - 부모 : 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 등 등록장애인 ● 서비스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어발달진단 및 심리상담서비스 - 언어치료·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놀이지도, 수화지도 등 ● 제공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증 소지자 - 독서지도사, 학습지도사, 놀이지도사, 수화통역사, 심리상담사, 보육교사, 특수교육자격을 소지자 등 -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1,200시간 이상인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대상자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령 : 만 10세 미만 -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·청각 등 등록장애인 ● 서비스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어발달진단서비스 - 언어치료·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수화지도 ● 제공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- 독서지도사·교사 자격증 소지자 -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	제도 개선
장애아가족 양육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원시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아동 1인당 연320시간 범위내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원시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아동 1인당 연480시간 범위내 지원 	급여 확대